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49회 제1차 정례회

검 토 보 고 서

2021. 6. 10.(목)

검 토 안 건	발 의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	의 원



복지도시위원회
(전문위원 조광현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”

검 토 보 고 서

(검토보고자 : 전문위원 조광현)

1. 회부경위

- 제출자 : 이흥민 의원 외 5인
- 제출일 : 2021. 5. 27.
- 회부일 : 2021. 5. 27. (의안번호 : 21-63)

2. 제출이유

교육과 직업에 있어서의 성취 부족, 이혼·양육포기로 인한 가정해체 등으로 보호관찰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시민의 피해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, 지역사회의 불안감 해소와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보호관찰 대상자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시책개발 및 홍보와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근거(안 제4조)
- 라. 사업추진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지원(안 제5조)
- 마. 보호관찰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, 비밀준수, 포상 근거 등(안 제6조 ~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(국민의 협력 등)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입법예고 : 2021. 5. 25. ~ 2021. 5. 30.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.
- 조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 -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자를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마포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대상자 등으로 정의
 - 안 제3조는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
 - 안 제4조는 추진사업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,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,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
 -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지원 근거 마련 및 보호관찰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

○ 검토의견

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보호관찰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호관찰 대상자가 원활하게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내 범죄 예방 및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내용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- 첨부서류 1. 보호관찰, 사회봉사·수강명령 현황
2. 관련법규

[표 1] 보호관찰, 사회봉사·수강명령 현황

● 지역별 보호관찰 대상자('21.3.27. 기준)

	마포구	서대문구	용산구	은평구
사건 수(건)	190	173	165	338

※ 연도별 실시사건 : 2018년 1,887건 / 2019년 1,904건 / 2020년 1,801건

● 사회봉사·수강명령 집행 현황

	2018년	2019년	2020년
사회봉사(건)	738	904	294
수강명령(건)	985	1,178	526

※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협력기관 폐쇄, 집합교육 제한 등으로 집행 실적 감소

● 국민공모제*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사회봉사 집행(2018~2020년)

- * 국민들로부터 사회봉사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 집행
- 마포구 : 가좌행복노인정에서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장수사진 촬영 및 경락 마사지 집행 보조
- 서대문구 :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주변 벽화 그리기, 굴레방 나눔 한마당 축제 참여 프로그램 진행
- 은평구 : 월드비전 꿈빛마을 신청 다문화 가정 및 결식아동에 대한 명절 특식 전달 및 도시락 준비
- 용산구 : 구립 용산 장애인 복지관 희망 동행 한강 걷기대회 장애인 행사 지원

● 사회봉사 협력기관 현황

마포구(2개)	서대문구(5개)	용산구(2개)	은평구(5개)
· 시립마포노인전문요양센터 · 아현노인복지센터	· 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 ·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· 흥은데이케어센터 · 수효사회림원 · 장애인직접재활시설그린내	·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·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	· 자비의집 · 빛가람장애인재활시설 · 은평보호작업장 · 인덕원벗다마을 · 빛나눔보호작업장

● 민간봉사자 지원 현황('21.3. 기준 61명)

-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29명에게 보호관찰위원을 연계하여 학업상담, 심리상담 등 멘토링 실시, KT&G에서 후원한 황사방역마스크 800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16명 지원
- 셉트리온 복지재단에서 미혼모 보호관찰 대상자 생활비 후원하여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1명에게 생활비 100만 원 지원

[관계법령]

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(약칭: 보호관찰법)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, 사회봉사, 수강(受講) 및 갱생보호(更生保護)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,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09. 5. 28.]

제2조(국민의 협력 등)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.

[전문개정 2009. 5. 28.]

제3조(대상자)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(이하 “보호관찰 대상자”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형법」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
2. 「형법」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
3. 「형법」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
4. 「소년법」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
5.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

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(이하 “사회봉사·수강명령 대상자”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형법」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
2. 「소년법」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
3.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

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(이하 “갱생보호 대상자”라 한다)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, 주거 지원, 창업 지원,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.